

[별표 24] <개정 2009.9.25>

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(제55조제1항 관련)

보고자와 보고사항	보고받는 자	서식	보고기한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가. 거래상황 기록부	영 제10조제1 항제1호의 액 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단체	별지 제37호서식	매 분기 다음 달 15일
나. 안전관리현황 기록부	영 제10조제1 항제1호의 액 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단체	별지 제38호서식	매 분기 다음 달 15일
2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(영 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 만을 말한다) 가. 거래상황 기록부	한국가스안전 공사	별지 제39호서식	매 분기 다음 달 15일
나. 시설개선현황 기록부	한국가스안전 공사	별지 제40호서식	매 분기 다음 달 15일
3. 삭제 <2009.9.25>			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한국가 스안전공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·도지사(시·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하여는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.			
비 고			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단체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 할 수 있다.			
2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거래 상황 기록부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	